

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0일(사건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)
신청인	노동조합명	대표자
	소재지	
	(전화번호) (팩스번호)	
피신청인	사업장명	대표자
	소재지	
	(전화번호) (팩스번호)	
교섭요구일		공고일

신청 취지 및 이유(별지 작성 가능)

사용자가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하여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9조의2제7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〇〇지방노동위원회 귀하

첨부서류	1.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서면 사본 2.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